

2022년도(제28회) 법무사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총평

여러분! 어려운 상황임에도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관련 법조문이 별첨이 된 경우, 현장 수험생들은 촉박한 시간 내에 선택의 순간이 놓이게 될 텐데, 과연 이 조문들을 어디까지 일어야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읽을 시간이나 있을지? 이러한 별첨은 수험생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어느 수험생의 한탄 中).

각설하고, 올해 형사소송법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 1. 1의 가】**에서는 피해자의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을 증인신문하여 피해자 진술영상녹화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법원은 원칙적으로 원진술자인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진술을 들어야 하지만, 다만, 피해자가 증인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이러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조화적인 제도들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대한 위헌결정인 헌재결 2021. 12. 23. 2018헌바524, **【문 1. 1의 나】**에서는 피해자 증인 보호를 위한 조치가, **【문 1. 2】**에서는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피해자의 경찰·검찰 진술조서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판 2022.3.17. 2016도17054[피해자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절반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속행된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이후 소재불명에 이른 사건], **【문 2. 1】**에서는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의 국외도피와 공소시효 정지 여부에 관한 대판 2008.12.11. 2008도4101[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 **【문 2. 2】**에서는 공소시효 특례규정인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의 소급적용 여부에 관한 대판 2021.2.25. 2020도3694, 그리고 **【문 3】**에서는 배상명령(소송촉진법 제25조)의 배제사유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대판 2013.10.11. 2013도9616이 출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반대신문권 보장과 관련한 **【문 1. 1의 가】**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나 **【문 1. 2】**의 최근 판례, 그리고 **【문 1. 1의 나】**의 피해자 증인 보호를 위한 조치나 **【문 2의 1, 2】**의 공소시효 등의 문제는 기본강의나 모의고사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던 문제이지만, 특히 **【문 3】**의 배상명령의 문제는 거의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로 수험생에게는 전형적인 불의타(不意打)라고 보이며, 배상명령의 근거조문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등의 언급이 전혀 없는 답안이 속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약간의 운도 작용하겠지만, 노력한 만큼 결과는 좌우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수고에 박수를 보내며, 내일을 계획하며 잠시나마 편한 마음으로 자유를 만끽하기 바랍니다.

서울법학원·박문각 김영환 올림